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9. 27 선고 2023가단373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9. 체결한 증여계약을 15,903,9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903,9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 1) D는 2010. 8. 4.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23차전373)을 구하여, 2023. 4. 24. 'D는 원고에게 14,446,412원 및 이중 일부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명령이 2023. 4. 22. 확정되었다.
- 2) D에 대한 신용카드 채무액은 2023. 11. 13. 기준 15,903,916원(= 원금 14,153,483원 + 이자 586,356원 + 연체료 1,164,077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나. 증여계약 등

- 1) D는 2022. 11.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11.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2) 피고는 2023. 9. 22. E에게 별지 부동산을 매도하였다(2023. 9. 21. 매매).

다. D의 채무초과상태

D는 이 사건 계약 무렵 별지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 가목과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F, G 등 다수의 채무(갑 제6호증)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계약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자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도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H(주)로부터 별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대출 편의를 이유로 아들인 D 명의로 바꿔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 매수자금을 부모가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별지 부동산은 D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이를 다시 반환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3. 2. H(주)로부터 별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D가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매수자금 대부분을 피고와 남편인 I이 부담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모의 것이라거나 대출 편의 목적으로 아들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별지 부동산이 D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피고가 선의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

1)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별지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므로 가액반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 채권액이 별지 부동산의 가액보다 적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인 15,903,9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D를 상대로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D가 다른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 전액의 가액반환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관

별지